

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

신고번호	
조합명	
대표자	
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	(전화:)
조합원 수	
조합원 모집 시기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